

의안번호	2205132
의 퇴 인	전재수의원
회 답 일	2024. 12. 13.
추계번호	24D471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 구금된 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4,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7억 4,400만원(연평균 1억 4,900만원)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활지원금 지급 (안 제22조제1호)	744	-	-	-	-	744	149

주 1.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수 및 지급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 기간 연장(제1항) :(현행) 현행법 시행일인 2022년 7월 27일 이후 1년→ (개정안) 현행법 시행일인 2022년 7월 27일 이후 3년	의무규정
2	안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22조(생활지원금)제1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제1호: (현행)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개정안)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1일 이상 구금된 자	재량규정
4	안 제22조(생활지원금)제3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제3호: (현행)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개정안)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	—	미대상: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26일까지이고, 2025년 1월까지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개정안에 따른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2년 연장되어 2026년 7월 26일까지이고, 진상보고서 작성 기간은 6개월 후인 2027년 1월 26일까지로 이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소요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에 따르면 현행법 제4조제2항1)에 따라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외의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추모사업 지원 등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 현재 계속 진행중이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다음과 같이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26년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입장임. 따라서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부사업</th><th>내역사업</th><th>2024년</th><th>2025년(안)</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지원 (2433-300)</td><td>위원회 운영</td><td>575</td><td>581</td></tr> <tr> <td>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지원</td><td>1,404</td><td>1,404</td></tr> <tr> <td>인건비 (부마민주항쟁위) (7002-156)</td><td>인건비</td><td>280</td><td>280</td></tr> </tbody> </table> 자료: 부마민주항쟁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2025년(안)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지원 (2433-300)	위원회 운영	575	581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지원	1,404	1,404	인건비 (부마민주항쟁위) (7002-156)	인건비	280	280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2025년(안)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지원 (2433-300)	위원회 운영	575	581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지원	1,404	1,404															
인건비 (부마민주항쟁위) (7002-156)	인건비	280	280															
2	안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관련자·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지원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에 대한 지원 비용을 추정 곤란															
3	안 제22조(생활지원금) 제1호	○	—															

4	안 제22조(생활지원금) 제3호	×	미첨부: 개정안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해직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생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대상자의 수는 2명이며, 현행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4²⁾에 따르면 해직기간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단가가 상이하나, 개정안에 따라 추가될 대상자의 해직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가 곤란함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생활지원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 수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심의·의결한 대상자 수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³⁾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

1) 현행법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2.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3.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애등급 판정
4.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8.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현행법 시행령 제19조(생활지원금)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지급액으로 하되, 해직기간과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현행법 시행령 별표 4. 생활지원금 지급기준표(제19조제3항 관련)

해 직 기 간	지 급 액(원)
2년 미만	2,934,000
3년 미만	4,401,000
4년 미만	5,869,000
5년 미만	7,336,000
6년 미만	9,095,000
이하 생략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11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2.1	2.0	2.0	2.0	2.0	2.0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안의 심사기간 및 다음의 사유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기존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은 2025년도 예산(안)⁴⁾에 기편성되어 개정안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2026년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규정⁵⁾하고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 구금된 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을 추가재정소요로 추계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 구금된 자로 심의·의결⁶⁾된 인원은 총 661명이며, 총 구금일수는 8,789일임
- 현행법 시행령⁷⁾에 따라 총 구금일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지급단가는 2024년 기준 81,307원이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개정안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추가재정소요로 7억 4,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593백만원

5) 현행법 시행령 제3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6) 2014년 위원회 출범 이후 2024년까지 10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인원임

7) 현행법 시행령 제19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표 2]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 구금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2026	2027	2028	2029	2030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총 구금일수 (A, 일)	8,789	—	—	—	—
지급단가(B, 원)	84,750	—	—	—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744	—	—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 구금된 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4,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7억 4,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 구금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744	—	—	—	—	74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